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○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

3. 주요내용
○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 관련 예산 지원 규정 → 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 지원 규정을 삭제함
※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

4. 참고사항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재정법」등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○ 입법예고 : 2019. 10. 22.~2019. 11. 11, 이상없음
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【기획감사실-10166(2019.10.11.)】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【가족지원과-41713(2019.10.11.)】

5. 검토의견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,

○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교부와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